

#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진정서

2021. 01. 04.

## I. 진정에 관한 정보

### 진정인

#### 단체명

- 한국장애포럼<sup>1)</sup>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up>2)</sup>

### 연락처

성명: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8-1, 한얼빌딩 3층

이메일: [kdf@thekdf.org](mailto:kdf@thekdf.org)

성명: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

이메일: [dlyu@minbyun.or.kr](mailto:dlyu@minbyun.or.kr)

---

1) 한국장애포럼은 16개 장애인단체(DPOs)로 구성된 우산조직으로, 2012년부터 장애포괄적 SDGs와 CRPD 이행 촉진 및 장애인권증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NGO로, 1988년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변론, 법제도 연구 기타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II. 사건의 경위

1.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는 117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29일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거주인 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3명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직도 44명이 비확진 거주인과 함께 신아원에 격리되어 있다.
2.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는 신아원을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등에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대책으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로 일관하고 있어, 확진자의 치료 공백은 물론, 비확진자의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코호트 격리는 정부지침과도 맞지 않으며 피해를 가중할 뿐이었다.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했던 만큼, 모든 거주인이 시급히 자가격리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3. 이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을 ‘예방적 코호트 격리’하여 시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했다고 하였으나, 이번 신아원 사건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른 경우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 구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 수용시설과 코호트 격리 모두 집단감염의 요인이라는 반증이다.

## III.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 감염 현황

### A. 집단시설 코호트 격리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 급증

4. 2020년 12월 29일 기준, 신아원에는 117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4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채 계속해서 비확진 거주인과 같은 시설 안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로 이송해 동거인들과 분리되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아원은 총 세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으나, 확진-비확진 거주인이 어떻게 분리되어 지내고 있는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5. (삭제)
6. 확진 판정을 받은 신아원 이용 장애인 당사자들 일부는 아직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시설 안에 격리되어 있으며, 비확진 장애인들 역시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확진자들과 같은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 신아원과 서울시는 충분한 방역조치에 따라 확진자 격리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신아원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25일 5명(거주인 2명, 직원 3명)에서 2020년 12월 31일 65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신아원 거주인이 100명이 넘는 만큼 시설 내 추가 감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1. 신아원 관련 코로나19 발생 현황<sup>3)</sup>

2020. 12. 27	2020. 12. 28.	2020. 12. 29.	2020. 12. 30.	2020. 12. 31.
40	50	60	61	65
(+35)	(+10)	(+9)	(+1)	(+4)

출처: 서울시 언론보도자료, 2020

## B. 외부로부터의 차단

7. 신아원 거주인들은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되고 있다. 한국장애포럼의 회원단체이자 장애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은 그간 신아원 거주인들과 탈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신아원 거주인 수 명과 통화 및 SNS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신아원 집단감염 사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긴급탈시설 혹은 긴급 분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12월 29일)을 진행한 이후부터 2021년 1월 3일 현재까지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 C. 정보의 폐쇄성

11. 장애여성공감은 2020년 1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접한 소식이었다. 장애여성공감은

3) 서울시 보도자료(12월 27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791](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791)

12월 28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827](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827)

12월 29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894](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894)

12월 30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978](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0978)

12월 31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1074](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1074) 참조)

해당 시설이 신아원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서울시에 명확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별도 경로를 통하여서야) 시설 내 코로나 감염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이후에도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에 명확한 정보(전체 감염자 수, 감염자 중 거주인 수, 자가격리 현황, 병원 이송 현황 등)를 공유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장애인단체들은 12월 29일에서야 117명 거주인 중 확진 거주인이 47명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아원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발표하고 있으나, 29일 이후 전체 확진자 수, 확진자 중 장애인/직원 숫자, 밀접접촉자의 격리 시설 이동 여부, 향후 관련 계획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13.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이러한 정보의 폐쇄성이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거주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신아원 거주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충분한 정보 없이 격리된 상태이다. (삭제)

#### IV. 관련 법규 및 위반사항

##### A. 건강권 침해

14.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사회권규약(1990년 비준),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비준)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이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2항(c)는 전염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를, (d)는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권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논평 14호는 정부가 건강과 관련한 물품과 보건의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가용성, 접근가능성, 수용성 및 양질의 네 가지 기본요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15.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제한한다.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폐쇄 정신병동에서 코호트 격리로 인해 100%의

거주자들이 감염되고 8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이후로 수차례 반복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 경험에도 불구하고<sup>4)</sup>, 팬데믹 기간이 10달이 넘는 이 시점에도 정부는 시설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코호트 격리’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사회권협약 제12조,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가 규정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B. 장애인의 자립생활할 권리 및 탈시설 정신 위반

16.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의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강조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조치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호는 탈시설 정책의 구축과 이행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로의 이전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에서 협약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탈시설화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46문단).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공중보건의 목적을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단절되도록 함으로써 협약 제19조에 위배되며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협약의 정신에도 반한다.

## C. 정보접근성,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등 침해

17.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코로나19 시기의 장애 관련 고려사항을 발표하면서 시설의 인구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여 정신병원에서의 조기 퇴원을 장려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sup>. 또한 시설 거주자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사건 신아원의 경우 정부는 시설 내 거주자들과 그 가족, 장애단체 등에 감염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은 내부인들의 외부와의 소통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감염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장애인권리협약상 규정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제21조)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제9조),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적절한 생활수준(제28조) 등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sup>6)</sup>

4)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72680.html](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72680.html)

5)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disability-considerations-during-the-covid-19-outbreak>

6) 참고: AL GTM 7/2020

## V. 정부의 대응 및 한계

18.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등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2020년 12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신아원 거주인 긴급탈시설을 촉구했다.<sup>7)</sup> 한국 장애계는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신아원 공간에 그 누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1) 신아원을 비롯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뿐인 ‘코호트 격리 원칙’ 폐기 및 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확진/비확진 거주인 전원을 시설 외부로 이동시키는 ‘긴급분산조치’ 이행, (2) 분산 조치된 거주인이 향후 다시 시설로 돌아가 2, 3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긴급 탈시설’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19. 서울시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 신아원에 있는 확진/비확진 장애인 전원을 분산 조치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20. 이에 장애계는 중대본에 코호트 격리 원칙 폐기 및 긴급 분산조치 실행, 치료 이후에도 거주인들이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21.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확진자 63명 중 20명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잔류중인 43명도 전원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비확진 거주인이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은 신아원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아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분산조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sup>8)</sup> 이는 비확진 거주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아원에 ‘코호트 격리’된 상태로 감금될 것을 의미한다.
22. 집단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격리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 항거하며, 장애계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서울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VI. 결론

23. 위 사안에 관하여, 우리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및 전 세계 시설 내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면밀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현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8일 이전까지 신아원 사안에 관한 보도자료를

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7>

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7>

발표하거나 한국 정부에 서신 발송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

- a. 거주시설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코호트 격리’ 원칙을 폐기할 것
- b. 주거, 활동지원,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할 것

24. ‘더 나은 미래(bulding back better)’를 구축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분산조치’된 시설 내 거주인들이 명백한 인권침해 생활환경인 집단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긴급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